

(주) 동 양 정 산

인 권 헌 장

문서 관리 번호	2024 - 0601400
최종 수정일 / 담당부서	2024-06-10 / 품질관리부



(주) 동 양 정 산

1. 개요

가. 제정목적

㈜동양정산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인권 헌장을 제정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지지하고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한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적용범위

㈜동양정산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의 적용범위 및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국내가 아닌 국외 현지 국가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원칙

제 1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동양정산은 부당 고용형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모든 임직원은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의 원본을 요구 및 보관하지 않는다.

제2조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동양정산은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 간 지위나 관계등을 이용하여 강압적인 업무지시 및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 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채용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수수료, 알선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더불어 임직원의 역량 및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교육기회 및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4조 인도적 대우

㈜동양정산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신적, 육체적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주) 동 양 정 산

제5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주)동양정산은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의사소통기회를 부여한다.

제6조 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예방 및 방지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

(주)동양정산 임직원은 지역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동, 이주근로자,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한다.

제8조 고객 인권 보호

(주)동양정산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9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ESG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리스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제10조 환경권 보장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 된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한다.

3. 인권경영 이행절차

가. 시스템 구축

① 인권경영 책임

(주)동양정산 최고이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 경영 추진 현황을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경영회의 또는 실무회의 등의 역할은 인권경영 현장의 재,개정 검토, 인사제도,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개정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조사 지시 및 구제방안 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이행

인권경영 담당자 업무는 인권현장의 재,개정, 실행계획 수립, 고충처리 절차,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나. 고충처리 시스템

① 인권침해 및 고충처리 운영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및 성희롱

★ 부서명 : 관리부

★ 이메일 : dyc6066@naver.com

② 인권침해 신고 처리

(주)동양정산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례, 주무관청의 규정,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한다.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명성 또는 평판 리스크에 영향이 될 수 있는 경우 최고 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③ 신고인 신분보장

(주)동양정산 임직원 모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공개를 일체 보도하여서는 안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및 처리결과 등은 비밀로 하여야 한다. 신고로 인한 신고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4. 인권경영교육 및 리스크 개선 이행

가. 인권경영 교육

(주)동양정산은 인권헌장 및 실행계획, 인권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인권경영 장려를 위해 평가되는 범위안에서 임직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내부 인권경영 추진 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추진하여 인권교육을 통한 임직원간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나. 인권경영 리스크 개선 이행

(주)동양정산은 인권 리스크 개선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헌장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근로환경, 근로조건, 인력운영, 산업안전, 고객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실사 지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한 평가 및 실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성실하고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않을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주) 동 양 정 산